

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수행 안내 - '사회주택' 부문

○ 상품명 :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'사회주택' 대출 상품

○ 상품 개요

- 1) 대출 목적 :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
- 2) 신청 자격 : 서울시 내에 사회주택을 공급 중이거나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기업, 비영리 민간단체, 중소기업(건설업·임대업·부동산업) 등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
- 3) 대출 규모 : 1,000백만원
- 4) 대출 시한 : ~ 2020년 5월 30일 (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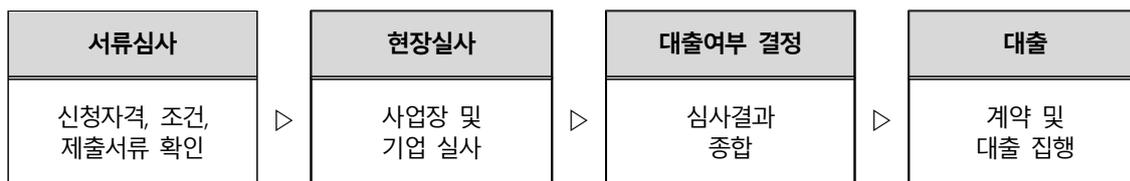
○ 신청 자격 상세

- 1)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각 호의 조건 모두 충족
 - ※ 하단 첨부한 해당 조례 참조
 - ※ 신청 자격 제한
 - 휴·폐업 중인 경우
 - 세금(국세·지방세) 체납 중인 경우. (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제외)
 - 이외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

○ 대출 조건

구 분	내 용	비 고
연 이자율	3%	
대출 한도	기업당 최대 250백만원 (총사업비의 90% 이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름)	사회주택 형태에 따라 대출 한도·기간 축소 및 상환 방식 조정 가능
대출 기간	최대 7년	
상환 방식	원금분할상환 원칙	
자금 용도	토지(건물)매입비, 임차보증금, 건축비,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용 포함	
채권 확보	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설정 (필요 시 공증)	

○ 심사 절차



○ 신청 및 상담

- 1) 신청 기간 : 2019년 7월 상품 안내 이후 ~ 자금 소진 시 (토·일, 공휴일 제외)
- 2) 신청 방법 : 제출서류 일체를 마련하여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제출
 - 제출된 신청 서류 미비 시, 보완이 완료된 시점이 신청 시점
 - 주소 : (04793)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, 607호 (성동안심상가)
- 3) 제출서류
 - 대출신청서(당사 양식)
 -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(서울시 사회투자자금)
 - 대출신청서의 붙임 '제출서류' 목록 중 해당 서류 일체
 - 이외 신청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
- 4) 상담 및 문의
 - 연락처 : 070-7178-2691, jslee1804@ksifinance.com
 - 방문 상담 :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일정 조율

○ 유의 사항

- 당사는 「서울시 사회투자자금 '사회주택 지원 용자'」의 수행기관으로서 대출 규모의 50% 이상을 서울시 승인 사회주택 사업자(서울시 주택공급과 선정)에게 용자하여야 함
- 당사는 신청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받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행·작성한 것으로 제출함
- 제출 서류 중 사본의 경우는 '원본대조필'에 법인 인감 날인. 서류가 허위일 경우 당사는 심사 중단, 용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함
- 일체의 심사 자료는 비공개이며, 세부 사항은 당사 사정에 따라 수시 변경 가능함
- 본 상품 안내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_시행 2019.3.28.

1. "사회주택"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.
2. "사회경제적 약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
 - 나. 「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
 - 다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 중 국가·서울특별시·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
 - 라.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
 - 마.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1인가구 등
 - 바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3. "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"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가. 「민법」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나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
 - 다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- 라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
 - 마.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
 - 바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)에 해당하는 기업

※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_시행 2019.1.1.

제2조(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)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(이하 "취약계층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
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
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
5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
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7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
8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9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10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
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- 나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12.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"정책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